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책임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1. 12. 9.
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1년 11월 15일

나. 발 의 자: 유승용 의원 외 4명

다. 회부일자: 2021년 11월 19일

라. 상정일자: 제234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

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21. 11. 23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유승용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, 소상공인,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사회적책임 경영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

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 ~ 제2조)
- 사회적책임경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)
- 기본계획 수립 및 사회적책임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 ~ 제5조)
- 사회적책임경영 인증 및 예우에 관한 사항 (안 제6조)
- 인증 및 포상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(안 제7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옥연)

- 본 조례안은
 - 영등포구에 소재하는 기업, 소상공인, 사회적경제조직 등의 사회적책임(CSR,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)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
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총 8개 조문과 1개의
부칙으로 구성되었음.
 -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
 -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사회적책임경영
(CSR)에 대하여 정의하였음.
- 참고로 법률 등에서 정의한 “사회적책임경영”은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
률」 제2조제11호에서 “기업의 의사결정과 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
에 대하여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활동을 통하여 기업이 지는 책임”으로 규

정하고 있으며, 국제표준화기구인 ISO(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)에서 “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안(ISO 26000)”을 지정하여 산업계, 정부, 노동계, 소비자, NGO 등 7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인권, 환경, 지배구조, 노동관행, 공정거래, 소비자이슈, 공동체 참여 및 개발의 7개 의제를 사회적인 책임 이슈로 정하고 있음.

-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관내 회사, 소상공인, 시설관리공단, 구 출자·출연기관, 구청장이 사무를 위탁한 수탁기관, 사회적경제조직, 비영리민간단체, 비영리법인 등으로 규정하며, 안 제4조에서 관내 기업 등의 사회적책임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게 하였음.
- 안 제6조는 사회적책임경영 우수 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규정한 것으로 인증 및 포상을 할 수 있게 하고 인증을 받은 자에게는 사회적책임경영 표식, 구 주요행사 초청, 그 밖에 예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사후관리를 규정하였음.

○ 검토 결과

- 본 조례안은 사회 전반에서 사회적 책임이 중요시 되는 시점에서 영등포구 내 기업 및 소상공인,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사회적 책임 증대를 위한 지원제도의 구축이라는 목적을 가진 본 조례안 제정의 타당성이 충분하며, 특별한 법률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책임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

(유승용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04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: 2021년 11월 일

발 의 자: 유승용 의원 외 4명

1. 제안이유

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, 소상공인,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 ~ 제2조)

나. 사회적책임경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)

다. 기본계획 수립 및 사회적책임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
(안 제4조 ~ 제5조)

라. 사회적책임경영 인증 및 예우에 관한 사항 (안 제6조)

마. 인증 및 포상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(안 제7조)

3. 제정안 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입법예고(2021.11.11. ~ 11.15.) 결과 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책임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, 소상공인,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사회적책임경영(CSR)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사회적책임경영(CSR)”(이하 “사회적책임경영”이라 한다)이란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영활동을 통하여 기업 등의 의사결정과 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.

1. 준법·투명·윤리경영 추진을 위한 건전한 의사결정 구조 수립
2. 인권 존중 및 올바른 노동관행 확립
3. 고객 만족 및 소비자 보호
4. 사회공헌 및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

제3조(사회적책임경영의 지원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관내 소재 다음 각 호의 자(이하 “기업 등”이라 한다)의 사회적책임경영을 행정적·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1. 「상법」 제169조의 회사
2.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3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

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출자·출연기관

4.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라 구청장이 사무를 위탁한 수탁기관

5.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

6.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

7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

제4조(기본계획 수립 등) ① 구청장은 관내 기업 등의 사회적책임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
1. 사회적책임경영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

2. 사회적책임경영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
3. 사회적책임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

4. 기업 등의 상호 간 협력 관계망 구축

5.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책임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제5조(사회적책임경영 활성화 지원) ① 구청장은 관내 기업 등의 사회적책임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사회적책임경영 실태조사

2. 사회적책임경영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(자문, 컨설팅 등) 및 교육
3. 사회적책임경영 성공모델 및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
4. 사회적책임경영 정보제공 및 홍보
5. 그 밖에 사회적책임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업

② 구청장은 사회적책임경영 활성화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기관이나 단체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
제6조(사회적책임경영 인증 및 예우) ① 구청장은 사회적책임경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사회적책임경영 우수 기업 등에 대하여 사회적책임경영 인증(이하 “인증”이라 한다) 및 포상을 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인증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사회적책임경영 표식 부착
2. 구 주요행사 초청
3. 그 밖에 사회적책임경영자의 예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그 밖에 인증 표식, 수여 기준, 방법, 예우 및 예우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④ 제1항의 포상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

및 모범국민 표창 조례」에 따른다.

제7조(인증 및 포상 사후관리) 구청장은 인증 및 포상을 받은 사회적책임 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 및 포상을 취소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.

1. 법령을 위반하여 인증이나 포상을 받은 경우
2. 거짓으로 인증이나 포상을 받은 경우
3. 범법 또는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
4. 그 밖에 구청장이 인증이나 포상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
제8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